식품위생법 시행령중 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를 "위생시험사·식품제조가공기사·수산제조기사 또는 영양사"로 하고, 동항제3호중 "위생학분야"를 "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생물학분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과자류제조업 : 곡분·당류등을 주원료로 하여 빵류·떡류·사탕류·과자류·만두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나. 당류제조업 : 설탕·포도당·과당·이성화당·엿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다. 아이스크림제조업 : 아이스크림·빙과류·액상 또는 분말아이스크림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라. 유가공품제조업 : 우유·산양유를 처리하거나 우유·산양유 또는 이의 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살균·건조·발효·혼합·정제 기타의 방법으로 분유·조제분유·탈지분유·연유·발효유·환원우유·버어터·치이즈 등을 제조하는 영업

마. 식육제품제조·가공업 : 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소시지·베이컨·알가공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바. 어육연제품제조업 : 어육 또는 고래고기등을 주원료로하여 어묵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영업

사. 절임식품류제조업 :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소금·간장·설탕등으로 절이거나 졸여서 단무지·젓갈류·콩조림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아. 김치제조업 : 무우·배추·파등 채소류를 소금등에 절여서 김치를 제조하는 영업

자.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식품을 빈통 또는 병안에 넣어 밀봉한 후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 처리하여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식품(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식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차. 건포류제조업 : 어육 또는 조개살을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카. 두부류제조업 : 두부·유부·묵등을 제조하는 영업

타. 식용유지제조업 : 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류를 원료로하여 식용유지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만,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파. 면류제조업 : 건면·숙면·당면 또는 조미료가 포함된 라면등의 인스탄트 면류를 제조하는 영업

하. 다류제조업 : 기호성 식물을 건조·가공한 것 또는 이들 식물로부터 추출한 가용성 성분을 물에 우리거나 녹여서 마실 수 있는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거. 청량음료제조업 : 탄산음료 ·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 과채류음료 · 곡류음료 · 혼합음료 · 분말음료등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주류 · 인삼제품 · 무지유고형분이 3퍼센트 이상인 음료 및 보존음료수를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너. 보존음료수제조업 : 광천수 또는 지하수를 음용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는 영업

더.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보존성이 높고 휴대와 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러. 건강보조식품제조업 :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 · 농축 · 정제 · 혼합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머. 특수영양식품제조업 : 유아 · 병약자 · 노약자 · 비만자 및 임산부등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성분을 가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버. 조미식품제조업 : 식품을 제조 · 가공 · 조리함에 있어서 맛을 돋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류 · 식초 · 소오스 · 케찹등의 조미식품(동 · 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 또는 단일성분을 원료로하여 제조 · 가공한 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서. 도시락제조업 :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어. 주류제조업 :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

저. 인삼제품제조 · 가공업 : 인삼(홍삼을 제외한다)을 원료로하여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

처. 식용얼음제조업 :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등에 사용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식용얼음을 제조하는 영업

커. 식품가공업 :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다만, 사회통념상 식품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분 또는 임가공(떡류를 임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영업과 생약재를 원료로사용하여식품을가공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임가공업 : 소비자로 부터 제공받은 재료(떡류 또는 산양가공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재료를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식품을 가공(떡류의 경우에는 당해업소내의 진열 · 판매를 포함한다)하여주는 영업

(2) 단순가공업 : 농 · 수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 · 절단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서로 혼합(부형제와 첨가물을 넣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조미식품등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동일건물내에서 식품소분업과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당해 업소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원료식품가공업 : 식품의 제조 · 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다른 종류의 영업의 제품과 원료가 같고 제조공정이 유사하거나 그 제조공정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식품가공업 : 기타 다른 식품제조 · 가공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

2. 첨가물제조업

감미료 · 착색료 · 보존료 · 표백제 등의 식품첨가물과 동 · 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의 천연첨가물 또는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 · 가공하는 영업

3. 식품운반법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 ·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 · 어류 ·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포장(2 이상의 제품을 나누어 혼합·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 식육·식용얼음 또는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유산균음료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 포장육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을 제외한다.

6.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7. 식품접객업

가. 대중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주로 탕반류·면류·죽류·도시락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다른 식품접객업 및 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

나. 유흥접객업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접객업(유흥접객원을 두고 노래·연주 또는 춤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바아·룸살롱·요정등)과 무도유흥접객업(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나이트틀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등) 및 외국인 전용유흥접객업(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유흥접객업과 무도유흥접객업)

다. 과자점영업 : 주로 빵류·생과자류·떡류·아이스크림류등을 갖추거나 제조하여 업소내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음료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

라. 다방영업 :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홍차에 레몬즙·우유·위스키를 첨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매하거나, 우유·청량음료 기타의 음료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

마. 휴게실영업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의 부대시설이나 공항휴게실, 고속도로휴게실, 유원지등에서 대중음식점영업, 과자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

8. 식품조리·판매업

가. 일반조리·판매업 : 주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농·축·수산물등을 업소내에서 가열·유탕등의 방법으로 즉석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며 부수적으로 주류 및 음료류를 판매하는 영업

나. 이동조리·판매업 : 기차·자동차·여객선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부수적으로 주류 및 음료류를 판매하는 영업

다. 출장조리·판매업 : 주문자가 요구하는대

로 그가 요구하는 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영업(주류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주사인 경우외에는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2항중 "유흥접객부"를 "유흥접객원"으로 한다.

1. 유흥접객원
2. 댄서
3.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대중음식점에서 안락한 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무용을 하는 자
5.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6. 유흥사회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제7조 각호의 영업중 제4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제6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업과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제외한 영업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호 커목의 식품가공업은 임가공업·단순가공업·원료식품가공업 및 기타 식품가공업으로, 동조 제7호나목의 유흥접객업은 일반유흥접객업·무도유흥접객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접객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허가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호 파목의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 하목의 다류제조업, 거목의 청량음료제조업, 너목의 보존음료수제조업, 러목의 건강보조식품제조업, 머목의 특수영양식품제조업, 저목의 인삼제품제조·가공업, 동조 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동조 제5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4호의 식품소분·판매업
2. 제7조제6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농어민 또는 농어민생산자 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이 경우 그 대상영업자 및 품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보건부영업허가의 대상)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어목의 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 동조 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동조 제7호나목의 유흥접객업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제7조제1호 가목의 과자류제조업 내지 동호 서목의 도시락제조업, 처목의 인삼제품 제조·가공업 및 동조 제2호의 첨가물제조업"을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동조 제2호의 첨가물제조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임가공영업·기타가공업(산양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2종 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를 둘 수 있다"를 "임가공업,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 및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경우에는 2종 식품위생 관리인에 갈음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2(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조제4호의 식품소분·판매업
2. 제7조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
3. 제7조제3호의 식품운반법, 제5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6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중 보건사

회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18조 본문중 "음식점은"을 "영업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7호 가목의 대중음식점영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영업소

2. 제7조제7호 나목의 유흥접객업으로서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영업소. 다만,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7조제8호 가목의 일반조리·판매업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영업소와 다목의 출장조리·판매업

제19조제2항중 "300인"을 "200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30인이내의"를 "40인이내의"로 한다.

제28조본문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3항"으로 하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지구등)"을 "(지역단위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중 "지구내에서"를 "조합지역내에서"로 한다.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연합회의 회장"을 "당해 조합의 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조합원 또는 연합회의 회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6조중 "영업소폐쇄처분 등을"을 "영업소폐쇄처분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청문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중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전통식품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상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각각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기금계정)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계정은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0조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다)의 권한중 제7조제1호가목의 과자류 제조업, 나목의 당류제조업, 사목의 절임식품류제조업, 아목의 김치제조업, 차목의 건포류제조업, 타목의 식용유지조업, 파목의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 버목의 조미식품제조업, 서목의 도시락제조업, 처목의 식용얼음제조업, 커목의 식품가공업,

동조 제3호의 식품운반업, 동조 제4호의 식품소분·판매업, 동조 제5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동조 제6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동조 제7호의 식품접객업 및 동조 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에 대한 법 제17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중 법 제17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 59조, 법 제 62조, 법 제64조, 법 제 65조, 법 제 69조 및 법 제 78조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의 1. 일반기준 나란중 "매출금액"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으로 하고, 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2. 과징금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 전의 최근 3월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최근3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자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의 변경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6월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중 인삼찻집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년간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신설되는 업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8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위반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영업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전문음식점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전문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동 부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업(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 연간매출액 (단위:100만원) / 1일과징금액 (단위:원)	식품 및 첨가물 제조·가공업외의 영업정지	식품 및 첨가물 제조·가공업의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1	10,000	36이하	75이하	75이하
2	20,000	36초과 — 75이하	75초과 — 150이하	75초과 — 150이하
3	30,000	75초과 — 115이하	150초과 — 240이하	150초과 — 230이하
4	40,000	115초과 — 160이하	240초과 — 330이하	230초과 — 320이하
5	50,000	160초과 — 200이하	330초과 — 420이하	320초과 — 410이하
6	60,000	200초과 — 250이하	420초과 — 520이하	410초과 — 500이하
7	70,000	250초과 — 300이하	520초과 — 630이하	500초과 — 600이하
8	80,000	300초과 — 360이하	630초과 — 750이하	600초과 — 710이하
9	90,000	360초과 — 420이하	750초과 — 870이하	710초과 — 830이하
10	100,000	420초과 — 480이하	870초과 — 1,000이하	830초과 — 950이하
11	110,000	480초과 — 550이하	1,000초과 — 1,150이하	950초과 — 1,050이하
12	120,000	550초과 — 630이하	1,150초과 — 1,300이하	1,050초과 — 1,200이하
13	130,000	630초과 — 710이하	1,300초과 — 1,500이하	1,200초과 — 1,350이하
14	140,000	710초과 — 800이하	1,500초과 — 1,700이하	1,350초과 — 1,500이하
15	150,000	800초과 — 900이하	1,700초과 — 1,900이하	1,500초과 — 1,700이하
16	160,000	900초과—1,000이하	1,900초과 — 2,150이하	1,700초과 — 1,900이하
17	170,000	1,000초과	2,150초과 — 2,400이하	1,900초과 — 2,100이하
18	180,000		2,400초과 — 2,700이하	2,100초과 — 2,300이하
19	190,000		2,700초과 — 3,000이하	2,300초과 — 2,500이하
20	200,000		3,000초과 — 3,400이하	2,500초과 — 2,800이하
21	210,000		3,400초과 — 3,850이하	2,800초과 — 3,100이하
22	220,000		3,850초과 — 4,350이하	3,100초과 — 3,400이하
23	230,000		4,350초과 — 4,950이하	3,400초과 — 3,700이하
24	240,000		4,960초과 — 5,600이하	3,700초과 — 4,100이하
25	250,000		5,600초과 — 6,500이하	4,100초과 — 4,500이하
26	260,000		6,500초과 — 7,500이하	4,500초과 — 5,000이하
27	270,000		7,500초과 — 8,800이하	5,000초과 — 5,600이하
28	280,000		8,800초과—10,500이하	5,600초과 — 6,200이하
29	290,000		10,500초과—12,800이하	6,200초과 — 7,000이하
30	300,000		12,800초과—16,000이하	7,000초과 — 7,800이하
31	310,000		16,000초과—21,000이하	7,800초과 — 8,900이하
32	320,000		21,000초과—30,000이하	8,900초과—10,000이하
33	330,000		30,000초과—	10,000초과—